

2021년 추가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2021년 추가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12.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1년 추가 울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참여대상(자격)

□ (공통)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2021년 6월말기준)

□ (공통) 주사무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다. 참여제의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 근무여부와 임금지급 사실, 임금채불 여부 등 확인
 - 자체 고용근로자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으로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울산광역시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 사업내용

가. 지원 기간 및 한도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부터 2021. 12. 31까지

※ 약정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연간 지원 한도

- (사회적기업) : 1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5천만원 이내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 사업비의 10%이상(2회차는 20%, 3회차 이상은 30%)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됨)하되 반드시 자부담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 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10~30%를 유지해야 함.

※ 최대 지원금액은 3억원

- (공동상표·브랜드사업) : 3억원 이내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 (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 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한 번의 공모 접수기간에 단독형, 공동형으로 둘 다 신청한 경우, 자부담회차는 단독형을 우선하고 공동형을 그 다음으로 함

○ 자부담 적용방법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경우 → 자부담 2회차 20% 적용

※ 자부담은 건별로 산정

※ 예시 : 1회차 적용 시 총 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 사업비가 9천만원, 자부담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에서는 사업개발비를 활용하여 중간 제품구매 등에 지출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므로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개발비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환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 추가지원 가능

- 최대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인증사회적기업)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 사회적기업을 제외한 타 사회적경제기업이 고용노동부 육성팀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받은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 ※ 마을·자활기업이 소관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 예시 : 지정기간 종료일이 '16. 12. 14'까지이고 지원기간이 '16. 7. 1 ~ '17. 6. 30' 까지의 경우, 지정기간 종료일인 '16. 12. 14' 까지 지원
- ※ 지정기간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단계에서 적정성 판단

나.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 (제도의 취지) 자금력이 부족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 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 (기본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체를 구성
 - (공동상표·브랜드 대표자)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사회적경제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해야 함
 - 주관기업은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상표·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사회적경제기업을 명시하여 해당 광역지자체에 신청서 제출 (별지 제1호의 2서식)
 - ※ 단,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동일한 구·군의 경우, 해당 구·군에 신청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 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지원금액 내 기업만 해당(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 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지원내용)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개 운영체 당 3억원 한도로 지원
 - ※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필요성 등 고려

다. 사업개발비 사용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능한 분야는 지원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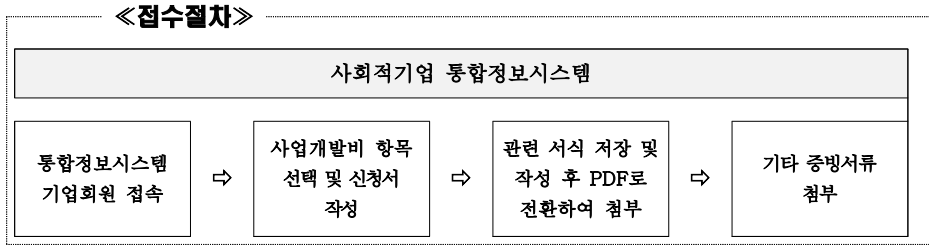
3.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1. 7. 12.(월) ~ 7. 27.(화) 18:00

※ 신청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만 신청 가능함

나. 제출방법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소재지 관할 기초 자치단체장(구·군청)에게 제출하되, 반드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으로 신청



※ 사업개발비 접수기간 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전산장애 유의 요망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4. 신청서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첨부

- 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단 공동형은 [별지 제1호의2서식])
 -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 ③ 법인등기부등본
 -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 예산운용 계획 작성 시 비교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⑥ 교육 이수확인증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e-러닝(기본과정-7시간, 노무-1시간, 회계-1시간) 이수 내용(제출불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같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⑦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 ⑧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별첨2 서식)
- ⑨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 ⑩ 사업비 소요액(신청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 ※ 견적서 : 2개업체 이상(본견적, 비교견적),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종/업태가 명시되어 있을 것) 제출
- ⑪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및 증빙서류(별첨3 서식)
 - (지표3)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지표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 (지표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지표6) 사회적 환원 노력도
 - (지표11) 매출성과
 - (지표14) 혁신노력도
- ※ 증빙서류 미첨부 시 실적 미 인정
- ⑫ 기타 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미동의 시 서류 반려함

-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 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납세증명,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담당 공무원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확인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재정상태 확인), 납세증명, 4대 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 e-러닝 이수 확인(해당 기업 ID 조회 후 이수 확인)
- 사업보고서

5. 심사항목

심사항목		배점	주요심사사항	배점
사업계획 (40점)	사업지원의 필요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지원의 필요성, 수익모델 개발 가능성, 사업 지원의 파급효과 등 - 사업개발비 지원이 신청기업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지 - 사업개발비가 지원되었을 경우 파급효과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정성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3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신청 금액이 사업개발에 필요한 적정수준이고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 해당기업의 신청서류 완성도, 행정전담 인력 보유 여부 등 사업개발비 사업 수행 능력이 존재하는지 등 <p>※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사업개발비 성과물의 실제 활용도, 효과성 등 결과를 2차 참여시 반영 → 2회차 참여기업은 반드시 전화 차 사업성과 제출</p> <p>※ 홈페이지 제작 등 웹사이트 개발시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웹 접근성'을 갖추었는지 포함하여 심사(검증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함)</p> <p>※ 웹 접근성이란: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p>	
기업성장성 (30점)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p>※ SVI 14번 지표</p>	정성평가
	기업의 성장 가능성	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이만 감소 <p>※ 신생기업 등 측정이 불가할 경우 정성평가</p>	
사회가치 (30점)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5 4 3 2 1
		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p>※ SVI 6번 지표</p>	정성평가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p>※ SVI 3번 지표 전체</p>	

가. 심사 및 선정 방법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심사기준(별표 2)으로 평가한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신청금액을 조정하여 결정
- 최저 점수를 정하여 기준 점수 이하 기업은 지원받지 못하도록 운영
- 사업개발비 선정 심사 시 후순위자 선정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 후순위자를 선정하고 사업포기 및 부정수급 등으로 잔여예산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계약체결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개발비 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계약자 변경 조건으로 심사
 -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 본인
 - ② 신청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 ③ 신청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 ④ 신청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 ⑤ 신청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⑥ 신청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⑦ 신청기업의 위 ①~⑤가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 ⑧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
 - 또한 사업개발비는 성격상 기업 외부의 자에게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고, 반대급부로 지출되는 것으로 내부 임직원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나. 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고려사항

- 사업참여기업 및 지원금액 결정 시 나눠주기식 배분 지양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수 사업을 신청한 기업 우선 선정 및 지원금 우대 지원
- 사회적기업이 경영컨설팅을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연계 유도
 - 경영컨설팅 상담을 받은 수진기업인 경우 컨설팅 내용을 확인하여 심사 시 우대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을 통한 사업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성파가 발생치 않은 분야는 지원 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제한
 - ※ 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등 비슷한 품목으로 계속 신청
- 인증 사회적기업은 '선정 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하고 예비 사회적기업에 우선하여 사업참여 기업으로 선정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 심사 시 자본재 구입 비용으로 신청되지 않도록 유의

다. 결과 발표

- 울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및 각 구군을 통해 개별 통보

6. 문의처 및 설명회 개최

- 울산광역시 사회혁신담당관(☎ 229-8493)
-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중구	일자리기업과	290-4784
남구	소상공인진흥과	226-3294
동구	일자리정책과	209-6975
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	241-7278
울주군	일자리정책과	204-1373

- 시스템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 1661-4006
-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267-6176
- 설명회 개최

일 시	장 소	문 의
2021. 7. 14.(수) 15:00	온라인 교육 (https://us02web.zoom.us/j/84118552092?pwd=bWlHScZyY0xzdHBzZlN6d24CUZk09)	267-6176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교육 진행 예정

- 설명회 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업무 지침 및 사회적 가치지표 작성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사용법 등
- 참석 대 상 : 2021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울산권역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
- 주 관 :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당 부 사 항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신청할 사회적경제기업은 반드시 설명회에 참석하여 '21년 변경된 지침 및 사업관련 내용을 숙지

7. 기타사항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울산시 및 심사위원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참고용 서식]

※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만 접수받으며, 온라인 접수 전 참고용으로 활용

(뒷쪽)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기관명	대표자(주민번호) (-)				
소재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 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기업	상시근로자수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 <input type="checkbox"/> 유한회사 <input type="checkbox"/> 합자조합 <input type="checkbox"/> 공동법원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영등·영여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기업유형	2. 법령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으로 보는 단체 (문화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마을기업 <input type="checkbox"/> 자활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마을기업 <input type="checkbox"/> 자활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인증(지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적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장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근로자 현황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과거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비총액	<input type="checkbox"/> 사업 총예산 <input type="checkbox"/> (1)=(2)+(3)				
	<input type="checkbox"/>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input type="checkbox"/> ③자부담금액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input type="checkbox"/>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원	<input type="checkbox"/> 홍보 마케팅	원	
	<input type="checkbox"/> 시장수요조사	원	<input type="checkbox"/> 제품개발	원	
	<input type="checkbox"/> 특허출원	원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제작	원	
	<input type="checkbox"/> 교육훈련비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중견·중소기업 참여여부	구분	제정 지원 사업 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인증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마을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기타()
	자활기업	시설보장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기타()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p>❖ 구비서류</p> <p><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 교육 이수 확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종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불요, 사회적기업 통합 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갈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p><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p>❖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p>❖ 작성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분야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전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정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이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 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전년업력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15.6.1/ 전문인력 '15.8.1/ 사업개발비 '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표자(주민번호)		(-)		
	소재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 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분야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재단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조합 <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 <input type="checkbox"/> 유한회사 <input type="checkbox"/> 합자조합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영농·영어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농업·어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 인정되는 조직형태 <input type="checkbox"/> 법인으로 보는 단체 <input type="checkbox"/> 기타(문화단체 등)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마을기업 <input type="checkbox"/>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 ☎[], ☎[])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기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마을기업 <input type="checkbox"/>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 ☎[], ☎[])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과거 지원	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지원횟수					
사업발생요	사업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③자부담금액		
사용용도	<input type="checkbox"/>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원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마케팅 원 <input type="checkbox"/> 광고 원		<input type="checkbox"/> 시장수요조사 원 <input type="checkbox"/> 시계통계자료 개발 원 <input type="checkbox"/> 제품개발 원			
	<input type="checkbox"/> 특허출원 원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 제작 원 <input type="checkbox"/> 쇼핑몰제작 원		<input type="checkbox"/> 교육훈련비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중장기 지원 참여여부	구분	제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인증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	
	일자리 창출 지원 ~		
마을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전문인력 지원 ~		
자활기업	사회보장료 지원 ~		
	사업비 지원 ~		
	기타() ~		
	시설보강비 지원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광역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 (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마을기업 <input type="checkbox"/>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 ☎[])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참여기업 (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마을기업 <input type="checkbox"/>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 ☎[])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참여기업 (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마을기업 <input type="checkbox"/>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 ☎[])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참여기업 (5)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주민번호)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마을기업 <input type="checkbox"/>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 ☎[])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별지 제1호의4서식]
5. 교육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종합정보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제출 붙임, 사회적기업 통합 정보시스템 ID 제출로 같음)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5시간 이상 교육과정, 공식 인증된 수료증)
 - * 교육 이수 확인은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동의사항>

-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해 신청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필요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동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 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방법

- 1) 사업분야 구분
 -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건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계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정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 2) 사업성과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 3) 최초지원일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일
 - * 예시: 일자리창출 '15.6.1./ 전문인력 '15.8.1./사업개발비 '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15.6.1. 일
-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업용도	<input type="checkbox"/> 브랜드(로고)	원	<input type="checkbox"/> 홍보 <input type="checkbox"/> 광고	원
	<input type="checkbox"/> 기술개발	원	<input type="checkbox"/> 마케팅	원
	<input type="checkbox"/> 시장수요조사	원	<input type="checkbox"/> 시제품제작	원
	<input type="checkbox"/> 특허출원	원	<input type="checkbox"/> 예술공연기획	원
	<input type="checkbox"/> 교육훈련비	원	<input type="checkbox"/> 홈페이지제작	원
		원	<input type="checkbox"/> 쇼핑몰제작	원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목표매출액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 1) 필요성
- 2) 추진내용
-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 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계 호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자 활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종 :

업 태 :

대 표 자 명 :

주 소 :

유효기간 : . . . 까지

상기업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지원대상 자활기업)에 의한 지원대상 자활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앙자활센터 원장 인

*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별첨1]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⑦고용, ⑧사회서비스제공 및 ⑨지역사회공헌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신청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조직 형태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기타[]					
업종(업태)	주요 사업내용					
유급 근로자 수	명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변경[]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개최 회수	주요 안건		
	주주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기타 ()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구성원 성과급 지급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기타				천원	
④ 지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노무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⑤ 지원 내역	정부 지원	구분	내용			금액
		인건비				천원
		전문인력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만 기부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210mm×297mm[백상지 80g/m²]

⑥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영업이익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⑦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⑧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보건[] 사회복지[] 보육[] 환경[] 산림[] 문화·예술·관광·운동[] 간병·가사 지원[] 기타[]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일반인					명	
⑨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시/도 () 구/군					
	공헌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 지 방 자 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 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임금 금액	근로시 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⑥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영업이익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⑦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일자리 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⑧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보건[] 사회복지[] 보육[] 환경[] 산림[] 문화·예술·관광·운동[] 간병·가사 지원[] 기타[]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일반인					명	
⑨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시/도 () 구/군					
	공헌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 지 방 자 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 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임금 금액	근로시 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업성과자료 (예시) (단독□, 공동형□)

1. 사업성과 요약

1) 기업 현황

기업 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담당부서	
	전화		팩스	
	휴대폰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2) 사업개발비 지원(단위: 원)

회차 (년도)	사업명	신청 항목	사업비총액 (보조금)
예시) 1회차 (2016년)	홍보 및 마케팅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리모델링 ● 홍보 리플렛, 포스터 제작 ● BI, CI 개발 	11,112,000원 (10,000,000원)

3) 사업 성과(12월 말 기준)

년도	매출액 (단위: 원)	사업 성과 전·후 비교	고용인원 (단위: 명)
예시) 2015년	86,442,246		6
2016년	319,079,4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리모델링 홈페이지 방문자수, 월 356명 → 600명 ● 시제품 개발 신규 상품 개발판매, 36건, 수익 4,600,000원 (2015년 12월 말 기준) 	8

사회적가치지표 작성 방법 및 증빙서류(지표3, 4, 5, 6, 14)

지표 3

사업 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배점 : 15점

지표정의

- 사회적기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 활동에서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다음의 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 착안사항의 ①번 / ②번은 필수 확인사항을 참고하여 해당항목만 기재합니다.

판단기준	착안사항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5점)	<p>※ 필수 확인사항(유형별 ① / ② 중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p> <p>①번: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으로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가형), 혼합형은 ①번항목만 작성</p> <p>②번: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으로 ①번 해당기업 외에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은 ②번항목만 작성</p>
	<p>①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있는 기업은 제시된 [부록]의 '참고자료 2'와 비교하여 기업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20.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상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수 - (임금) '20.12월 임금대장 상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 <p>② 사회적가치 실현노력(기타): 취약계층 고용의무가 없는 기업은 기업의 내부운영 상 사회적가치 실현수준 등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가치 및 미션·비전 등에 따라 추진한 관련 활동 및 기타 추가내용을 기재하고, 해당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구비 <p>③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근로자 보건·안전 위한 노력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기업차원에서의 직원 대상 무료건강검진 및 정기적인 보건·위생·안전교육 실시내역 유무 등 <p>④ 고용의 질: 기업 고용정책 및 근로환경 개선 노력도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취업규칙 내 취약계층 및 여성근로자 차별금지 조항, 일·가정양립 정책 및 유연근무제 활용사례,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판단기준	착안사항											
	<p>활동 사례 등</p> <p>① (제품·서비스의 사회적가치) 기업이 제품·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p> <p>②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수준을 서술</p> <p>③ (기타 사회적가치) 상기 항목 외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회적가치를 자유롭게 기재하고, 그 수준을 서술</p> <p style="text-align: center;">【 기업 작성예시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제품·서비스</td> <td>생 산</td> <td>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td> </tr> <tr> <td>판 매</td> <td>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td> </tr> <tr> <td>이용자</td> <td>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td> </tr> <tr> <td>기 타</td> <td>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예시)	제품·서비스	생 산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판 매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	이용자	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	기 타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
구분	내용(예시)											
제품·서비스	생 산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제품생산시, 지역농가와 직접수매계약을 통한 농가소득 창출 (예) 친환경소재 원료(또는 폐기물재활용)사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판 매	내용: 기업이 제품·서비스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제품·서비스를 할인하여 판매 (예) 제품·서비스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적으로 환원										
이용자	내용: 제품·서비스를 이용자가 활용하여 발생하는 사회적가치 (예) 공정무역 제품사용을 통해 제3세계 어린이 인권보호에 기여 (예) 위안부피해자 인식확산, 전기차 환경보호, 텀블러 자원절약 등											
기 타	상기 기재된 내용 및 예시에 해당되지 않으나 기타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와 관련된 사항 등을 기재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10점)												

작성사례

○ 아래의 작성사례는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내용
내부운영의 사회 가치	<p>1. 기업별 선택 작성항목</p> <p>①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취약계층 의무고용 사업장인 경우)</p> <p>- 취약계층 고용비율(2020년 12월말 기준)</p> <p>(예시) 2020년 12월 31일 기준 총 유급근로자 10명 중 취약계층 인원은 총 7명. 따라서, 취약계층 고용비율 = 70%</p> <p>- 취약계층 평균시급(2020년 12월 기준)</p> <p>(예시) -취약계층 7명 총 급여 = 10,092,000원, 총 근무시간 299시간 -취약계층 7명 평균시급 = 10,092,000 ÷ 299 = 33,753원</p> <p>② 사회적가치 실현노력(취약계층 의무고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p> <p>- 사회적가치 실현노력</p>

구분	내용
	<p>작성 예시 1.</p> <p>- 당사의 사회적 미션은 원예활동을 통해 자연과 함께하는 사회추구로서 원예치료용 화분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음.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원예치료서비스의 제고를 위하여 전문가를 채용토록 규정함</p> <p>- 2020년 12월 현재 전문가(자격이수 등)를 채용하여 서비스를 운영</p>
	<p>작성 예시 2.</p> <p>- 당사의 사회적미션은 창작공연을 통한 사회문제해결로서 공연되는 뮤지컬의 50%이상은 반드시 창작작품을 공연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 및 사회환원 노력을 하고 있음.</p> <p>- 2020년 구성원(단원 포함) 노력으로 58%의 환경분야 창작 작품을 공연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단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자발적 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토록 하였으며, 개인별 실천성과는 극단 단원 연말 시상에 반영하여 환경보전의 실천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음.</p>
	<p>작성 예시 3.</p> <p>- 당사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의 선도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연주공연을 기획하고 교육을 실행하고 있음.</p> <p>- 발달장애인 연주자를 위한 별도의 연습실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를 추가 고용하여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p> <p>※ 위 내용은 단순예시이며, 기업이 생각하는 사회적 가치실현 노력을 형식·내용·분량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재 가능</p>
	<p>2. 전체기업 공통 작성항목</p> <p>③ 근로자 보건 및 안전</p> <p>-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직장 가입 시행</p> <p>- 근로자의 보건안전을 위해 건강검진을 매년 실시</p> <p>- (근무환경 개선노력) 감정노동자를 위한 업무고충 상담사 배치</p> <p>④ 고용의 질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근로 환경</p> <p>- 여성 및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 승진, 급여지급 시 차별금지 시행</p> <p>- 임신, 육아 등에 따른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제 시행</p> <p>- 사내 동호회 운영비 지원, 직원 휴게실 설치</p> <p>- 기금운영을 통한 직원대상의 복지포인트 지급 등</p>

구분	내용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사용자)의 사회가치	<p>작성 예시 4.</p> <p>제품 및 서비스의 사회가치</p> <p>가. 생산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윤식 및 유아식 제조 시, 원료가 되는 쌀을 지역의 농가와 직접 구매계약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로 품질제고 및 농가 소득창출 - 제품 생산 시, 버려지는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예코백을 제작하여 자원의 재순환 및 환경오염을 예방 - 친환경 식자재를 사용하고 지역 내 농수축산물 사용비율을 확대 - 생산부에 근무하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지속적 근무환경 조성 위해 장애유형별 적합한 작업과정을 별도로 구분배정하고 관리·개선 중 <p>나. 판매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인 청소·소독서비스를 지역 노인센터 대상 무료 제공(3회) - 제조한 도시락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 납품 -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시, 제품 판매비용의 1%를 적립하여, 기금 운영을 통한 연말 사회공헌활동(기부)을 추진 - 사회적기업 간 공동 유통사업을 통해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관계망 구축 및 판로 공유 <p>다. 이용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려지는 배송포장재를 고객으로부터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도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사회가치 발생 <p>라.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고객 안내를 통해 배송포장재를 수거하여 재활용하고 있음. <p>※ 위 내용은 예시이며, 형식·분량은 자유롭게 요약하여 1장 이내 기재</p>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2020년 12월말 기준 고용보험 내역
 - 2020년 12월 임금대장 등
 - 근로자 보건 및 안전 관련 증빙 / 고용 정책 및 복지 등 관련 증빙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배점 : 5점**
(4번5번지표 총계5점)

지표정의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및 협의체 간 상호협력 활동수준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 내용을 기재합니다.

【 신청서 양식 】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 수

- ① 협력기관에 해당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인증·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② 협의체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네트워크(당사자조직)를 의미합니다.
ex)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 □□업종네트워크 등
- ③ 협력활동의 범위는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프로젝트, MOU체결을 통한 사업협력 등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협력활동을 기재합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은 '6번 지표'의 기타(비금전적) 조직역량활용에 해당됩니다.)
- ④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최소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 참고사항

- 활동내역의 증빙자료는 MOU체결문서, 협의회(네트워크) 회원명부 및 회비납부 내역, 공동프로젝트 보고서 등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간 협력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가 해당됩니다.
-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체 외의 단체인 공공기관·민간기업 등과의 협력활동은 '지표 5'에 포함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됩니다.
- 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광역·기초단체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 조직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 업무가 본업이므로 협력기관에서 제외됩니다.

작성사례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사회적기업	공동판매장 운영을 위한 합동프로젝트 수행	수시
□□협동조합	원자재 구매협약 체결	월 1회
△△지역 사회적기업협의회	△△지역 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원사 활동	연 1회
☆☆업종 네트워크	☆☆분야 표준화 및 브랜드화 등 관련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분기별 1회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사회적 경제기업 및 협의회 간 협력활동 관련 MOU 문건
- 사회적 경제기업 및 협의회 간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등
- 협의회 회원사 명단, 협의회 회의 참석공문, 회비 납부내역 등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배점 : 5점
(4번5번지표 총계5점)

지표정의

-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역사회의 기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활동수준을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신청서 양식에 따라 공공기관·민간기업 간 협력활동 내용을 기재합니다.

【 신청서 양식 】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 ① 지역사회는 기업소재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국 범위를 의미
- ② 협력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은 자치단체(기초·광역),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외의 모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 정부부처, 광역·기초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사회복지법인 등
- ③ 협력활동의 범위는 지역사회 기관 간 공동프로젝트, MOU체결을 통한 사업협력 등 기업의 주 사업영역과 관련된 협력활동을 기재합니다.
(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은 '6번 지표'의 기타(비금전적) 조직역량활용에 해당됩니다.)
- ④ 또한 1회성의 단발성 활동은 지양하고 지속적이고 정기적 협력활동을 지향합니다.(최소 연 1회 이상, 활동내역 증빙자료 없을 시 불인정)

※ 참고사항

- 지역사회는 기업의 소재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전국범위를 의미합니다.
- 활동내역의 증빙자료는 MOU체결문서(협약서), 계약서, 공동프로젝트 보고서 등 지역사회의 기관 간 협력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일체가 해당됩니다.
- 공공기관·민간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관 외 사회적경제기업 및 협의회와의 협력활동은 '지표 4'에 포함되고 본 지표에서는 제외됩니다.

작성사례

협력기관	협력활동	횟수
OO대학교	인재 양성과 기술·경영 혁신 도모 산학 협력 (관련 전공 인원 교류 및 교육)	연 1회
OO구청	도시 농업 운영 프로그램 사업	연 1회
OO 어린이집	무료 영유아발달 선별 검사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를 선택하여 구비합니다.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 맺은 MOU, 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 지역사회 협력 인정기관과의 협력활동 보고서, 보도자료, 회의록, 활동사진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배점 : 10점

지표정의

○ 사회적기업의 모든 활동은 우선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해야하며, 이러한 활동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으로 구분하여 사회적 환원 노력도를 확인하는 지표입니다.

작성방법

○ 다음의 판단기준별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사회적 가치측정 신청서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판단기준	착안 사항
조직 내부운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 측정 대상연도(2020년)와 전년도(2019년)의 유급근로자 총원과 비교하여 근로자 증가 유무를 기재 - 증빙자료: 2019, 20년도 12월말 고용보험내역(또는 유급근로자 명부) ② 구성원 성과급 :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 성격의 구성원 금전지급 내역을 의미하며, 성과급 지급 유무를 기재 - 증빙자료: 2020년도 직원 임금대장(또는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 * 정기 상여금, 워크숍 비용, 명절선물 등의 간접지급 내역은 불인정 ③ 교육훈련비 :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20년도 교육비 지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직원 대상 교육비(금전) 지원내역 증빙자료 일체 ④ 시설투자비 : 근로환경개선 등을 위한 '20년도 시설비 투자 내역 기재 - 증빙자료: 금전적 시설비 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 지역사회 재투자 : 기업이 지역사회 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투자·후원·기부한 금액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지역사회 재투자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0년 내) ② 사회서비스 제공 : 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한 내역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하며, 있을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0년 내)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 주 사업영역 외에 조직의 인력·시간 등을 활용한 비금전적 자원(봉사활동, 재능기부 등)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입한 내역을 기재 - 증빙자료: 기업의 비금전적 역량활용 내역 증빙자료 일체(2020년 내)

작성사례

구분	내용
조직내부 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① 부가적인 일자리 창출 - 2019년(12월: 10명 → 2020년(12월) 13명 / 총 3명 증가. ② 구성원 성과급 : 20년 우수직원(2명) 선정, 총 200만원 성과급 지급 ③ 교육훈련비 -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시 인당 20만원 교육비 환급하는 등 총 200만원의 교육훈련비 지출. ④ 시설투자비 : 직원들의 피로도 경감을 위해 복지차원으로 노후된 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및 각종 편의설비 구매(총 1,300만원)
조직외부 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지역사회 재투자) 지역 청소년단체(30명)에 총 1,000만원 현금 기부 (사회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 산모(8명)에 보육서비스를 5개월 간 20% 저렴하게 제공(환산금액: 80만원)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지역주민 창업을 위한 무료 창업교육 및 마케팅 노하우 특강(대표), 지진 피해지역 구호활동 참여(임직원 봉사활동)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조직 내부활용: 2019년, 2020년(12월말 기준) 고용보험내역, 2020년 12월 기준 임금내역, 2020년 직원 교육훈련비 지원내역, 2020년 시설비 투자내역
 - 조직외부활용: 2020년 지역사회 재투자 금액, 2020년 사회서비스 제공내역
 - 기타활용: 비금전적 활동내역(활동보고, 보도자료 등 증빙가능자료 일체)
 - 기타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지표 14

혁신노력도

배점 : 10점

지표정의

- 기업이 경쟁력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도적·기술적 혁신의 노력을 활동 내역 및 추진실적 중심으로 종합적이고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 혁신은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에 존재했던 관습이나 방법 등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혁신은 신기술의 개발, 새로운 경영전략 도입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활용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이와 같은 혁신을 통해 생산성 증대, 신사업 모델 발굴, 조직문화 개선 등을 달성하고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최근 2년간(2019년, 2020년)의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혁신의 노력과 그 결과를 신청서 양식에 따라 기재합니다.

[신청서 양식]

- ① 착안사항이 포함하지 못하는 혁신활동의 내용 및 성과는 '기타'란 활용하여 기재
- ② 착안사항 항목을 모두 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되는 항목만을 기재

구분	착안사항
과정의 혁신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기업이 직시하는 사회문제 및 해결노력·활동 등
	② (제도개선 노력) 권한 위임, 프로젝트 조직, 의사소통 구조, 유연근무제 및 시차출퇴근 등 기업운영제도 개선노력 내용 등
	③ (전문인력 도입)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조직의 운영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채용내역 등(전문인력 자격사항은 기업특성을 고려하여 판단)
	④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Bottom up 방식의 사내제안을 통한 프로젝트 또는 아이디어 공모전 등의 외부의견 수용 내용 등
	⑤ (경영시스템 개선) 경영컨설팅, 경영혁신 관련 자문, ERP시스템 및 그룹웨어 도입 등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내용 등
	⑥ (시장 및 기술 분석노력)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동향분석 또는 시장확대를 위한 고객수요 파악, 경쟁사 분석 내용 등
혁신의 결과	⑦ (R&D 투자)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수행 내용 및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 등
	⑧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의 혁신노력 기재
혁신의 결과	① (사회문제 해결노력 결과)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노력에 따른 결과·실적 등
	② (신상품 도입 및 수익발생) 신상품 도입 내용 및 수익발생 유무 등

구분	착안사항
	③ (고객만족도 증가율) 고객만족도 조사유무 및 만족도 증가내용 등
	④ (자원절감) 제조공정·제조시간 등 사업운영에 따른 자원 절감내역 등
	⑤ (이용자 수 증가) 혁신활동을 통한 이용자 수 증가내역 등
	⑥ (기술적 성과) 특허, 상표권, 저작권, 실용신안 내역 등
	⑦ (혁신 제품·서비스) 기존 시장에 없던 혁신제품·서비스 출시 내역 등
	⑧ (기타) 상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혁신결과 기재

작성사례

구분	착안사항
과정의 혁신	<p>(사회문제 해결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 및 지체장애인 보장구의 높은 가격에 대비하여 낮은 활용도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생산단계를 단축하여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장애인보장구를 보급 <p>(제도개선 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력근무제 운영(자율 출퇴근제 운영) <p>(사내제안 및 외부의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망을 통한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포상금 지급, - 관련학과 대학생 대상 아이디어 공모전 및 장학금 지원 등 외부의견 수용 <p>(경영시스템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혁신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 수행 - 회계시스템 외 ERP 추가 모듈(기능) 도입 등으로 경영 시스템 선진화 추구 <p>(R&D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투자액 50,000천원(매출액 대비 8% 수준)
혁신의 결과	<p>(사회문제 해결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관련 공공기관 대상 정기납품 계약체결 및 생산 확대(해외진출 등) <p>(신상품 출시 및 수익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 출시로 인한 매출(40백만원) 및 거래처(4개소) 증가 <p>(혁신제품 및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부자 및 기부금액 증가(전년대비 10%)하였음 - 사업장중심의 지역기반 물류센터 조성으로 소분유통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한 지역농산물 매입량 확대 및 지역 로컬 푸드 시스템을 확립 - 운송 카드 개발을 통해 물건 적재, 수집하는 과정에서 작업 효율성 증대 - 대통령상 수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상 수상, 기술특허 획득 등

※ 위 내용은 단순예시이며, 형식·분량은 자유롭게 요약하여 기재 가능

증빙서류

○ 다음의 증빙자료 전체를 구비합니다. -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 일체

사회적 가치 측정 보고서

I.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작성요령1 참조	설립일	작성요령2 참조	
주업종	작성요령3 참조	사업자등록번호		
인증(지정)번호	작성요령4 참조	인증(지정)유형	작성요령4 참조	
전화번호(회사)		전화번호(휴대폰)		
주소	작성요령5 참조			
기업연혁(수상내역 등)				
주요사업내용	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매출 및 영업이익(단위: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단위: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p>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p> <p>2021년 월 일</p> <p>대표자 (서명)</p>				

※ 작성요령

- 공통사항
 -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1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0년)**을 의미
 -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예시, 측정기관 의견 기재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20.1.1.)
3. 주 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예비)사회적기업만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요약)
내부운영의 사회적가치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적가치	

* 2020년 실적 기입

측정지표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	---------------------------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측정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 2020년 실적 기입

* 2020년 실적 기입

측정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	----------------------

측정지표	11. 매출성과
------	-----------------

(단위: 천원, %)

2020년도 매출액 (a)	2019년도 매출액 (b)
매출액 성장률 $((a-b)+b) \times 100\%$	

판단기준	내용(요약)
조직 내부운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 2020년 실적 기입

판단기준	내용(요약)
과정의 혁신	
혁신의 결과	

* 최근 2년(2019년, 2020년) 실적 기입

<참고> 사업개발비 사용가능 항목(업종별 예시)

● 동일한 지원 항목이라도 업종에 따라 유형을 달리하여 적용이 가능하며 업종별 지원 가능항목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타 업종에 대해 항목에 대한 지원불가를 의미하지는 않음

● 예시된 이외 지원 항목은 심사를 통해 필요성 여부 판단

업종	지원 항목 내용
공통	<p>홍보디자인 개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I: (corporate identity) 기업이미지통합으로 마크, 로고, 상징을 통해 표현 • BI: (brand identity) 브랜드 이미지화작업 •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국·영·일·중문 브로슈어 제작 • 팜플렛, 카탈로그(회사소개, 상품소개 등) <p>인증획득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출원 (공동상표 제외) • 실용신안출원 •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비) • 국내외 규격인증 및 (공인기관)시험평가 <p>국내외박람회 참가, 상담회 참가 지원</p> <p>정보화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구축(리뉴얼) • 웹 호스팅 <p>론칭 행사비</p>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를 포함한 자본재 리스(자부담비율 50% 이상, 사업 수행기간에 한함) • 시장 개척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계약서 번역 지원 등)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 B2B(솔루션 제작 의뢰): 기업이 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나 물품을 판매하는 방식의 전자상거래
음식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뉴 개발(주메뉴 개발 및 시연회) • 요식업관리메뉴얼(원가관리 프로그램 등) • 서비스 메뉴얼 구축
소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쇼핑몰 론칭 비 • CI·BI 개발을 통한 패키지 (쇼핑백, 포장지 등)
일반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관리프로그램 개발비(돌봄서비스의 고객추적관리) • 시장진입을 위한 제화 렌탈비(자부담비율 50%이상에 한함) • B2B 솔루션 개발비
지식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전수비용, 서비스모델(s/w) 개발비 • 여행상품개발, 공연테마개발비 • 공연 콘텐츠 개발 (ex. 공연DVD 제작)
IT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웹사이트 서버운영비 • 스마트폰 앱 등 IT 기술을 상용화 하여 사업적합화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제품 기술 개발 프로젝트 R&D • 제품 개발·설계(3D) • 역설계(리버스 엔지니어링) •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정개선 • 시제품 제작(mock-up 실험크기)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제품외장산업디자인 • 제품 업그레이드 R&D (ex. 옥외광고업의 기능성간판개발, 약세사리 디자인업의 금속소재 가공기술 연마) • 기술 이전 사업화
음식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P커스톰마이징(프랜차이즈에 한함) • 프랜차이즈화 (운영 메뉴얼과 레시피를 기반으로 통합 지원)
소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로 개척(공동상표·브랜드 개발, 브랜드 제휴) • 의류 도소매업의 패션쇼 지원 • 공정무역업체의 “공정무역 페스티벌, 박람회” 개최

업종	지원 항목 내용
일반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R&D (ex. 조기치매환자 대상 인지재활프로그램 개발)
지식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시연) • 차세대 공연전시 기술개발 • 기존 문화컨텐츠의 공연기획
IT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용기술 업그레이드 위한 프로젝트 R&D • 상용화를 위한 contents 개발비

* 업태 용어 정의

- (1) 제조업: 무기 또는 유기물질에 기계적·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
- (2) 음식업: 음식물의 생산·소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 (3) 소매·유통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
- (4) 일반서비스업: 제화나 노동력 등을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활동
(ex. 대여, 대행, 청소용역, 간병 등 케어서비스)
- (5) 지식서비스업: 지식이나 노하우 등 비물질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산업활동
(ex. 컨설팅, 교육, 문화예술 등 주요 산업 분야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공연사업, 지식정보사업, 콘텐츠출루선산업)
- (6) IT분야: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 활동
(ex. 솔루션 개발, 도구tool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